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임미애 · 박홍배

박 정 · 이학영 · 정혜경

서영석 · 박해철 · 김남희

김남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.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,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,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.

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·총괄·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(안 제41조제1항),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(안 제41조제2항 등)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.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본문 중 “·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”를 “· 제34조제3항·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”로, “·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”를 “· 행정안전부·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및 제38조제2항에”를 “·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”로, “및 산업통상자원부에”를 “·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및 산업통상자원부에”를 “·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에”로 한다.

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산업안전보건”을 “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(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를 포함한다)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,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~ ④ (생략)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(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)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, 차관(제29조제2항·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)·차장·실장·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, 계획의 입안, 연구·조사, 심사·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. 다만, 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제34조제3항 ·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----- . 행정안전부 ·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에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

·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행정안전부 및 <u>산업통상자원부</u>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. 제41조(고용노동부)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, 고용보험, 직업능력개발훈련, 근로조건의 기준, 근로자의 복지후생, 노사관계의 조정, <u>산업안전보건</u>,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u><신 설></u>	----- ----- ----- ·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및 <u>고용노동부</u>----- --. 제41조(고용노동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산업안전보건</u> <u>정책의 수립 · 총괄 · 조정</u>--- ----- -----. ② <u>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</u> <u>사무(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를</u> <u>포함한다)를 담당하는 본부장</u> <u>1명을 두되, 본부장은 정무직으</u> <u>로 한다.</u>
--	---